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태양 추적이 가능한 집광채광장치를 통해 고밀도로 응축된 태양광을 릴레이 렌즈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광손실로 장거리(50m 이상) 광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기술에 비해 독보적으로 집광효율이 우수하고, 최소한의 전송공간 이용과 광전송거리 한계를 극복하여 실내 또는 음영지에 최적의 자연조명 제공은 물론 지하시설물 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자연 그대로의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태양광전송기술이다.

<범위>

태양광 고밀도 집광이 가능한 태양추적식 일체형 비구면거울 집광부, 광전송경로 및 광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릴레이 렌즈를 적용한 광전송부, 인공조명과 자연조명 병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산광부가 적용된 태양광 원거리 전송 조명시스템 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8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한보엔지니어링(김기태) ②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윤세한) ③양우건설(주)(고문철)

나. 전화번호 : ① 053-764-5445 ② 02-3438-8000 ③ 02-2679-5200

2. 명칭 :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가 일체화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Hi-R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방수/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Hi-R 방수시스템은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를 일체화한 난연성능의 방수시트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방수공법으로 시트상부에 난연 우레탄코트를 적용함으로써 방수공법의 난연화를 통해 옥상부위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여 재난 시 보다 안전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초의 방수공법이다.

기존공법과는 달리 상부 우레탄도막이 시트 상부 전면에 도포되지 않고, 조인트 부위 등 취약부위에만 시공됨에 따라 시공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기존 복합방수공법의 패러다임을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방수공법이다.

또한 PVC시트와 우레탄 도막방수의 일체화를 위해 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P&U프라이머를 최초로 개발, 적용하여 별도의 중간 매개체 없이 시트와 도막을 일체화함으로써 접합부의 수밀안정성 및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복합방수공법이다.

<범위>

방염섬유와 개량된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난연성 방수시트에 접합부에만 함침용 우레탄을 적용하고, 별도의 2차 방수층이 없이 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2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연장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절차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수면관리자와 협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에게 처리지연이라는 오해를 없애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개정

처리기간 9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